

심사보고서

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1호
심사일자	2026. 6. 16.



위원장 신영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431
------	-----

2026년 6월 16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5. 27. 송파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26. 6. 1.
- 다. 상정일자: 2026. 6. 16. 제332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선 및 보완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용어 정의 통일·정비 및 현행화
(안 제1조·제2조·제3조·제6조·제9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대상 변경(안 제11조)
 - ▶ (변경 전) 여성정책 담당 과장 → (변경 후) 성별영향평가 소관 업무 국장
- 법에 규정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사항 반영(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관련법규
 - 1) 「성별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2)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 3)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4)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 예산조치: 별도비용 없음
- 관련부서 사전협의: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규제사전심사)
 - ※ 성별영향평가(여성보육과)
- 기 타
 - 1) 개정문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2) 입법예고: 2026. 4. 29. ~ 5 19. (20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진미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성별영향평가법」에서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조 및 제2조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고,
- ▶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평등’으로 하고,
- ▶ 안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를 신설하여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 ▶ 안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 ▶ 안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송파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송파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림.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전정 위원

- 송파구에 현재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성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중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 기존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을 앞으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됨.

【질의】 나봉숙 위원

- 본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 설치가 되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는지?

【답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 위촉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임.

【질의】 최옥주 위원

- 안 제5조제2항제4호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는?

【답변】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중앙성별평가위원회에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